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제정이유**

○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안건상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심사·검토 및 위촉,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분과위원회의 종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정규칙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예정

○ 2027년도 본예산 상정(예정)

※ 관련된 비용추계는 조례안에 기 첨부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12. ~ 2026. 12. 2.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의 상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파주시 소속 부서 또는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안건 심의요청서에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 위원회의 기능과의 관련성, 자료의 충실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상정 여부와 상정 순서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선정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촉후보자의 위촉자격, 전문성, 활동경험 및 위원회 전체 구성의 대표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검토하기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감사 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시민참여, 숙의·공론, 행정·정책, 갈등조정 또는 위원 선정·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검토한다.

1. 위촉후보자의 위촉자격 및 위촉 제한사항 해당 여부

2. 공개모집 지원자의 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3. 공개모집 외 위촉후보자의 전문성, 지역대표성, 활동경험 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위원 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촉후보자의 심사·검토 및 위촉) 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항목별 점수와 평가의견을 심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초로 성별·연령·지역·활동분야 및 사회적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구성의 대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사 및 대표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촉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추천 명부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성별·연령·지역·활동분야 및 사회적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최종 위촉후보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자격 미충족, 위촉 제한사항, 제출서류의 중대한 허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촉 유형과 분과를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자치·소통분과

2. 민생·경제분과

3. 보건·복지분과

4. 도시·평화분과

5. 환경·농업분과

6. 문화·교육분과

7. 교통·안전분과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통홍보관 (☏820-7784)
입안자	소통홍보관	최 을 영
	핵심현안TF팀장	김 태 환
	담당자	민 채 린

[별지 서식] 안건심사요청서

의 안 번 호			
시민통합위원회 심의요청서			
안 건 명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근 거	·사업추진관련법령(조문발췌)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주요내용	· 문제상황, 현황과 원인 · 시민의견 및 제안내용 · 기대효과 및 예상위험 · 협조사항(관련 부서 및 단체)		
주관부서		협조부서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추진배경 또는 목적,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요약서(해당하는 경우) 3. 총괄적인 사업계획 및 심의대상 업무의 처리절차도 4.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의 요약서 5. 기타 참고자료			
제안부서 또는 의원	(부서명/분과명) (제안자)(서명/인)		

□ 참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소통홍보관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60개선의견)

1. 소통홍보관-9077(2026.11.10.)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6년 11월 18일(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버튼 오른쪽의 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 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파주060개선의견) 1부. 끝.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경기파주060</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소통홍보관</td></tr>
<tr><td>담당자명</td><td>민채린</td><td>전화번호</td><td>031-820-7784</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11월 10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소통홍보관)</td><td colspan="4">- 규칙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td></tr>
<tr><td>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3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table>
<tr><th>구분</th><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th>개선안
(법령 수정안)</th><th>검토사유</th></tr>
<tr><td>1</td><td>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하 생략></td><td>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 생략></td><td>「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td></tr>
</table></td></tr>
</table>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60			
정 책 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당자명	민채린	전화번호	031-820-778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③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당초 조례안>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하 생략> <개선안>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 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전면 수용 : 제4조 개선의견에 따라 수정 <수정안> 제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 생략>

2026년 11월 11일

파주시 소통홍보관

□ 참고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소통홍보관

(경유)

제목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소통홍보관-9076호(2026. 11. 10.)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61	소통홍보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동의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류은선	감사2팀장	유가	감사관	2026. 11. 12.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13629 (2026. 11. 12.) 접수 소통홍보관-9162 (2026. 11. 12.)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별관 2층, 감사관실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3 팩스번호 031-940-4089 / eunsun94@korea.kr / 비공개(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6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소통홍보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민채린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1.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참고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소통홍보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 소통홍보관-9075(2026. 11. 10.)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소통홍보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통계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2026. 11. 10. 이재면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20956 (2026. 11. 10.) 접수 소통홍보관-9081 (2026. 11. 10.)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 당	팀장 김태환 담당자 민채린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목적 및 안건상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심사·검토 및 위촉,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분과위원회의 종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